



제 안 설 명

- 고령군 장애인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계획안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고 령 군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안” 및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안(경북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건)”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사유는

고령군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고령군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 및 단체의 지원 목적(안 제1조)
- 장애인 및 단체, 시설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지원대상,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보조사업자의 책무(안 제3~7조)를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의 운영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계획안(경북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는

- 시설위치 : 대가야읍 고아리 130-18번지
- 사업비 : 총공사비 43억원(특별교부세 7, 도 5, 군 31)
- 규모 : 연면적 1,034.7㎡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창호 및 외부판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준공후 운영은 장애인 가족지원, 역량강화, 권리옹호, 장애인 돌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추진에 경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으로 설치 협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릅니다.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고 1991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오랜 노하우 및 복지네트워크를 토대로 도내 의성, 봉화, 영양, 영덕 분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으로 운영 할 경우 2024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라 1년 분관 운영비 264,000천원중 도비 25%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관내에 발달재활(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운동,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동안 대상자들이 관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고령군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운영되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종사 직원들의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되고 직원들의 임금과 시설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위탁운영의 장점을 살려서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를 경북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제정안」의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월 일

주민복지과장 박 현 수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주민복지과장)
제출 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4. . .
제 출 자 : 고령군수

1. 제정이유

- 고령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단체·시설 지원범위(안 제3조)
 - 장애인 시설 운영 관리
 -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 사업의 운영(안 제4조)
 -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 장애인복지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4. 7. 16 ~ 8. 5.(의견제출 없음)

(2) 부서협의

(가) 규제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서 : 별도 첨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단체부설 기관 포함)를 말하며,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단, 지적발달협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타지역 주소자도 회원으로 가능함.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단체 및 시설로 한다.

1. 시설 운영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6. 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사업
9.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강화를 위한 사업
10.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에 정의된 “장애인 단체” 중 신규 지원은 회원 50인 이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24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검증 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 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집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환수 등의 제반 문제는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적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고령군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시설 및 단체의 운영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비용 추계
- 지원규모

지원내용		산출내역	비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시설	5,639,194천원 × 1식 = 5,639,194천원	5개소
	장애인복지관	300,000천원 × 1식 = 300,000천원	1개소
	장애인 단체	743,000천원 × 1식 = 743,000천원	7개소
	계	6,682,194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지원금		6,682,194	7,016,194	7,350,194	7,684,194	8,018,194
증 감		-	334,000	334,000	334,000	334,000	

4. 재원조달 방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국, 도, 군비)

5. 부대의견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2028년까지 5년간 36,750,970천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6. 작 성 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이귀분 (054-950-6160)

〈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054-950-6160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계획안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제 출 자	고령군수 (주민복지과장)
연 월 일	2024. . .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계획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설치 협약 -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4. .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시설개요

- 시설명칭 :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 시설구분 : 노유자시설
- 시설위치 : 고령군 고아리 130-18
- 규 모 : 1034.7m²(재활운동실, 주간보호실, 강당, 사무실등)
- 소요예산 : 43억원(특별교부세 7, 도 5, 군 31)
- 사업기간 : 2022 ~ 2024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분관의 운영)

2 추진배경

- 장애인 인구의 증가(고령군 전체 인구의 10.7%)로 복지욕구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관내에 발달재활(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 및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대상자들이 관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불편 해소 필요
- 고령군 직접운영 장애인복지관은 20명 이상의 인력과 연간 예산이 1,200,000천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시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복

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경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운영 시군 : 의성, 봉화, 영양, 영덕)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2024』

○ 장애인 복지관 정원 권고사항

- 정원 20~29명 (1국 6팀, 1,000m²이상)

○ 장애인 복지관 분관 운영

- 복지관이 소재한 곳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등에 분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해당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복지관에서 운영함.
- 종사인력은 개소당 전문직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

○ 운영예산

· 운영비 : 연 264,000천원 정도(도비 25%, 군비 75%)

- 인건비 : 214,000천원(직원 4명)

※ 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 원장(관장) 15호봉 67,426천원정도

기본급 4,455,900원+퇴직금,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 직원 5호봉 50,000천원정도(3명)

기본급 3,227,600원+퇴직금,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 운영비 및 사업비(공과금, 프로그램, 비품구입등) : 50,000천원

※ 초기 기자재 구입(별도) 예상금액 : 250,000천원

3 운영방안

○ 위탁개요

- 위탁시설 및 사무 :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 수탁자 :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5년(연장 가능)
- 수탁자 선정방식 : 지정위탁(분관설치 협약)
- 소요예산 : 연 264,000천원 정도(도비 25%, 군비 75%)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분관의 운영)

○ 건물 구조

- 층별 구성(설계내역)

1층	2층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사무실,상담실 - 자원봉사자실 - 직업재활실및휴게실 -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운동실 - 물리치료실 - 치료프로그램실 (언어, 미술 등) - 컴퓨터 교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보호실 - 평생교육프로그램실 - 다목적 강당

○ 분관설치협약 절차 및 일정(안)

협약사전회의 (고령군, 도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복지관, 고령군의회)	분관설치협약 (고령군-도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 운영
9. 10 ~ 9. 30	10. 1 ~ 11. 30	'25. 1. 1

○ 분관설치 협약의 필요성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수 있음.

◇ 도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도비 25%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종사 직원들은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됨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현황

- 관 장 : 백운기(전 경북도청 서기관)
- 개 관 : 1991년
- 주 소 : 경북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 2024년 경북 장애인복지관 주요 역점 사업
 -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중심형 조사 연구
 -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중심 지원 사업
 -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직업지원 사업
 - 스마트 홈케어 사업 등 소외지역 해소 사업

○ 필요 인력 구조

- 4명 : 분관장 1, 사회복지사 2, 물리치료사 1

· 장애인돌봄사업(주간보호, 주간활동서비스, 재활치료 등) 인력 별도

	직 원	업 무	비 고
경북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	4명		
	분관장	센터 업무 총괄	(정보화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재가서비스 체험활동)
	사회복지사 2	회계서무, 후원관리 사례관리, 평생교육	
	물리치료사 1	물리치료, 재활운동	

○ 운영방법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 사업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리 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직업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군 거주하는 장애인 - 일부 시설은 운영규정에 따라 비장애인도 이용 가능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수탁자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 - 모든 시설물 주의와 안전의무 관리 - 센터 내 새로운 시설물 설치 시 군수의 사전 승인 - 기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휴관 및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오전 9시에 개관 - 휴관 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 지정 공휴일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운영에 따른 협약서(안)

고령군수(이하 “갑”)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하 “을”)은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이하 “고령분관” 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령분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중 및 신뢰) “갑” 과 “을” 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비 등)

- ① 고령분관운영비는 “갑” 은 도 보조금 지급률에 맞춰 충당하고, 보조금 외 “을” 이 수행기관(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사업, 치료지원 등)으로 선정될 경우 “을” 의 수입 예산은 사업비 또는 운영비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고령분관 사무실은 고령군이 제공한다.
- ③ 고령분관 조직구성은 4명으로 한다.
- ④ 별도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 은 추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법령등의 준수)

- ①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해지 시까지로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 ① “갑” 과 “을” 양 당사자는 고령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또는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할 경우 등 해지 사유 발생 시 상호 합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 과 “을” 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60 일전에 상호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승계) “갑”은 고령군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령분관을 폐관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분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를 3자(수탁자 등)에게 고용 승계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승계가 어려울 경우 협약 해지 2년전 “을”에게 통보하여 대비토록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약내용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도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의 운영)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갑” 기 관 명 : 고령군청

대 표 자 : 이 남 철 (인)

주 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을” 기 관 명 :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대 표 자 : 백 운 기 (인)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4 기대효과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 협약을 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지역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175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냉천로 252번길 5-10

제4조(업무 및 기능)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기획·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8.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붙임2 참고자료

○ 경상북도 시군 복지관 현황

시군	계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아동 복지관
성주군	1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1			
고령군	0					
청도군	2	장애인종합복지관		1	1	
		노인복지관				
의성군	2	노인복지관		1	1	
		도장애인복지관 의성분관				
청송군	0					
영양군	1	도장애인복지관 영양분관		1		
칠곡군	2	장애인복지관		1	1	
		칠곡노인복지관				
예천군	1	노인복지관			1	
봉화군	1	도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		1		
울진군	2	장애인복지관		1	1	
		노인복지관				
영덕군	2	도장애인복지관 영덕분관		1	1	
		실버노인복지관				
울릉군	1	노인복지관		1		

시군	계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아동 복지관
포항시	5	포항종합사회복지관	3	1	1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포항노인복지관				
		선린아동복지관				
경주시	4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1	1	2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경주노인종합복지관분관				
김천시	3	김천부곡사회복지관	1	1	1	
		김천시장애인복지관				
		김천시노인복지관				
안동시	3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1	1	1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구미시	5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	1	2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구미시장래인복지관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구미노인복지관 분관				
영주시	3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1	1	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주시노인복지관				
영천시	2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1	1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주시	2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1	1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	4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2	1	1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문경시장래인종합복지관				
		문경시노인복지관				
경산시	4	경산시백천사회복지관	1	1	2	
		경산시장래인종합복지관				
		경산시노인복지관				
		경산시어르신종합복지관				

○ 시군 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직원수	계 (도비 25%)	사무비	사업비	예비비등	바우처 (별도사업)
영덕분관	4	분관장 (총괄) 256,355	240,045	15,710	600	장애인 활동지원
영양분관		사회복지사 (회계,자원 봉사관리) 384,046	223,047	154,628	6,371	재활치료 프로그램
봉화분관		사회복지사 (돌봄,체력 프로그램) 485,145	287,062	20,606	177,477 (재산조성)	장애인 활동지원
의성분관		사회복지사 (바우처, 평생교육) 300,948	232,728	67,499	721	장애인 활동지원
청도장애 인복지관	21	1,201,000	991,000	180,000	30,000 (재산조성)	주간활동 서비스
울진장애 인복지관	22	1,700,000	1,200,000	500,000		활동지원 주간활동

☞ 장애인복지관(분관) 미운영 시·군 : 청송,성주,예천,울릉,고령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미운영 시·군 : 청송,고령

〈 소관 부서명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054) 950 - 6160